

## 영주자격(F-5) 소지자의 배우자 사증(F-2-3)

### 신청요건

#### F-2-3: 영주자격(F-5) 소지자의 배우자

영주자 가족 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몽골 국민 또는 거주자는 비자신청센터를 통하여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. 1년 이내 단수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#### 신청인 준비서류

1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
2. 여권/여권사본 (사증신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)
3. 무범죄증명서(만18세이상 60세 미만, 최초 방문자에 한함)
4. 혼인관계증명서(최초 신청자에 한함)
  - 미성년자(19세 미만자)의 경우, 본인의 출생등록조회서(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신분증 사본 제출)
5. 건강진단서 (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)
  -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된 것
  - 일반항목 이외에 결핵, 정신질환, 성병, 후천성면역 결핍증, 결핵 등이 포함되어야 함

#### 초청인 준비서류

1. 초청장(지정 양식), 초청장 상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(공증필요)
2. 결혼배경진술서 (지정 양식)
3. 신원보증서(별첨서식, 보증기간 : 입국일로부터 2년)
4. 외국인등록증 사본
5. 혼인관계 입증서류 (영주자격소지자의 국가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)
6. 초청인 재정(소득)입증서류  
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), 재직증명서, 계좌거래내역 등 신용정보조회서(전국은행연합회)

※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및 배우자(피초청인)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

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(GNI) 이상일 것

※ 2021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 40,247,000원

단, 동거가족 수가 3인 이하인 경우 GNI 70% 이상(28,172,900원)

7. 주거요건 입증서류
  - 부동산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(해당자)

8.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

9. 건강진단서(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)

-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된 것
- 일반항목 이외에 정신질환, 성병, 후천성면역 결핍증, 결핵 등이 포함되어야 함

10. 재혼인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회서 사본

※ 주의사항

초청인이 영구(F-5)자격 취득 이후 3년이 경과할 것